

<p>공원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7건이나 접수된 사항으로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원을 신규로 결정할 시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.</p> <p>5. 심사결과 · 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90%;">100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금호 제12주택개발량개발구역 지정 및 풍치지구 일부해제</p> <p>2. 제안이유 : 금호 제12주택개발량개발구역 지정 및 풍치지구 일부해제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【주택개발량개발구역 지정】 ○위 치 : 성동구 금호동1가 1470 일대 ○내 용 · 토지현황 : 27,013㎡(국·공유지 3,551㎡, 사유지 23,462㎡) · 건축물 : 187동(유허가 168동, 무허가 19동) · 세대수 : 457세대(가옥주 187세대, 세입자 270세대) ·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지구, 풍치지구, 미관4종지구(일부) · 주민동의율 : 토지(72.6%), 건축물(71.1%) 【도시계획용도지구(풍치지구) 변경결정】 ○위 치 : 성동구 금호동1가 1470 일대 ○내 용 · 면적 : 530,838㎡→517,338㎡(감 13,500㎡) ·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지구, 풍치지구, 미관</p> <p>3. 주요요지 ○주택개발량개발구역 지정조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역명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위 치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면적(㎡)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오류 제2</td> <td>구로구 오류동 14-50번지 일대</td> <td>12,888</td> <td>신규지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의안 번호	100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	오류 제2	구로구 오류동 14-50번지 일대	12,888	신규지정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종지구(일부)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본 안건은 성동구 금호동1가 1470 일대 국·공유지 3,551㎡와 사유지 23,462㎡등 27,013㎡에 신규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현재의 금호·옥수풍치지구 530,838㎡중 이 재개발구역 예정지역에 저축된 13,500㎡(일부도로변 포함)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임.</p> <p>○재개발구역 내에는 무허가 건물 등 187동의 건물에 가옥주 187세대와 세입자 270세대 등 45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독서당길 북측에 위치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경사지대이며 인접지역은 금호 6·8구역 등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음.</p> <p>○이 지역은 도로나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대지도 소형택지로 되어 있어 재건축이 적당치 않아 이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역지정(안)에 동의의견이며,</p> <p>○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풍치지구해제(안)에도 동의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· 보류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/> <p>오류제2주택개발량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5. 8. 8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건 명 : 오류제2주택개발량개발구역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오류제2주택개발량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
의안 번호	100										
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								
오류 제2	구로구 오류동 14-50번지 일대	12,888	신규지정								

<p>○구역현황</p> <p>-면 적 : 12,888㎡(사유지 10,762㎡, 국·공유지 2,126㎡)</p> <p>-건축 물 : 78동(유허가 66동, 무허가 12동)</p> <p>-가 구 수 : 226세대(가옥주 76세대, 세입자 150세대)</p> <p>-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주차장정비 지구</p> <p>-동 의 율 : 토지 77%, 건물 82%</p>	<p>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사유</p> <p>○노원구 월계동 748 외 3필지 10,666㎡ (구거부지 1,009㎡ 제외)는</p> <p>-월계근린공원과 국철(경원선)로 둘러쌓여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</p> <p>-도시계획도로(폭원 25m)로 구분되어 각각의 면적이 자연녹지지역 내 허가 가능한 자동차운전학원 최소면적(6,600㎡)에 미달되므로</p> <p>○도시계획도로 동측 공원용지 2,247㎡는 공원에서 해제하여 자연녹지지역에 포함하고</p> <p>○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서측 자연녹지 5,056㎡(기부채납 예정)는 공원용지로 대체 지정하여 상호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함.</p>																	
<p>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p>제출년월일 : 1995. 9. 6</p> <p>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</p>																		
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입안내용</p>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시 설 명</th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3">면 적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변경전</th> <th>변경후</th> <th>증 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변경결정</td> <td>근린공원</td> <td>노원구 월계동 794 산 3-1</td> <td>1,621,000</td> <td>1,623,809</td> <td>증 2,809</td> <td>불합리한 공 원경계조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	변경전	변경후	증 감	변경결정	근린공원	노원구 월계동 794 산 3-1	1,621,000	1,623,809	증 2,809	불합리한 공 원경계조정
구 분	시 설 명			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									
		변경전	변경후	증 감														
변경결정	근린공원	노원구 월계동 794 산 3-1	1,621,000	1,623,809	증 2,809	불합리한 공 원경계조정												
<p>4. 참고사항</p> <p>○도시계획상 : 자연녹지지역</p> <p>○공람공고 의견접수 : 없음.</p>		<p>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p>제출년월일 : 1995. 9. 6</p> <p>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</p>																
<p>1. 개 요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2">용도지역변경</th> <th rowspan="2">면적 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당 초</th> <th>변 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</td> <td>일반주거지역</td> <td>일반상업지역</td> <td>51,400</td> <td rowspan="2">합정 지구중심</td> </tr> <tr> <td>준주거지역</td> <td>일반상업지역</td> <td>3,6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위 치	용도지역변경		면적 (㎡)	비 고	당 초	변 경	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	일반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51,400	합정 지구중심	준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3,600		
위 치	용도지역변경		면적 (㎡)	비 고														
	당 초	변 경																
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	일반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51,400	합정 지구중심														
	준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3,600															
<p>2. 상정사유</p> <p>○마포구청 합정사거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(합정지구중심)의 하나로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</p>		<p>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결정코자 함.</p> <p>3. 참고사항</p> <p>○현재의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</p> <p>○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의견없음.</p>																